

# 인도네시아

## 검역제도



농림축산식품부

KFRI

한국식품연구원

## 1. 인도네시아 검역제도 및 검역법

- 인도네시아는 수생종을 포함한 동식물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법안 No.16 (1992)- “동물, 수산물 및 식물의 검역 관련” 을 통해 검역 요구조건을 규정하고 있음.
- 인도네시아의 검역제도를 중심으로 집행하는 기구는 농업부 산하 농업검역본부 (IAAQ)이며, 해양수산부는 산하 검역, 품질관리 및 수산제품안전청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수산제품의 검역제도를 관장함.
- 가장 주요한 법안은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No.15(2002)- “수산물의 검역” 법안이며, 검역 관련 조례 및 규정의 변경을 통해 검역제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음.
  - 신선 과일 및 채소(HS 6류~12류)의 경우, 과거 8개의 관세 항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반입되었던 것이 현재 4개소로 축소됨.

신선 과일 및 채소  
반입 가능 관세 항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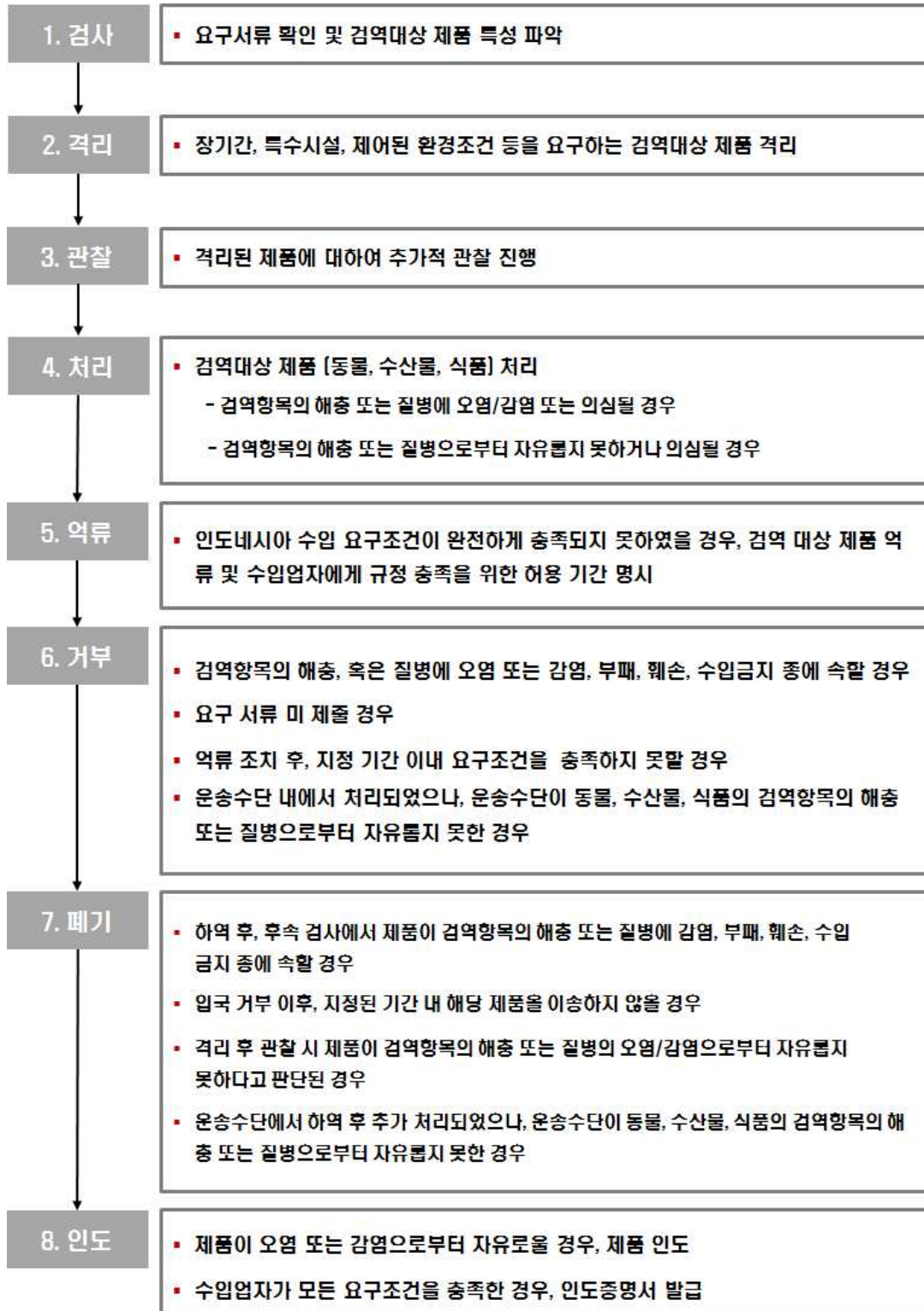
- 수라바야 만중 페락 해항(Surabaya, Tanjung Perak)
- 메단 블라완 해항(Medan, Belawan)
- 자카르타 스카르노 하타 공항(Jakarta, Soekamo-Hatta)
- 마카사르 스카르노 하타 해항(Makassar, Soekamo-Hatta)

- 하지만, 예외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농업부 장관령 2012년 42호 및 43호에 의거하여 수입국 인정체결국(Country Recognition Agreement, CRA)<sup>1)</sup>을 대상으로 자카르타 항구(만중 프리옥)를 허용하고 검사를 간소화함.
  - 한국의 경우, 자카르타 항구 이용 및 통관검사 간소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품목인 국산 배 품목의 수입국 인정체결국(CRA) 획득을 우선 추진하여 2014년 1월부터 한국 천안산 배에 한해 자카르타 항구로 통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.
- 수입되는 제품의 유형에 따라 검역 절차를 위한 다양한 서류들의 제출 또는 작성이 요구되며, 일반적으로 서류를 직접 제출이 가능하나 일부 서류양식과 요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함.
  - (온라인 제출 가능 서류) 운송수단/목재포장재/PSAT 확인서 및 승인서, 식물검역 시행절차/안전감독, 화물하역 승인서, 훈증증명서, 소독증명서, 식물 검역증명서, 운송수단 도착 보고서, 원산지 및 경유지 국가의 건강증명서

1) 2013년 기준 CRA 획득국가: 미국, 호주, 캐나다, 뉴질랜드 등

## 2. 검역절차

-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, 제품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에서부터 수입업자에게 인도하기까지 다음과 같은 검역절차를 거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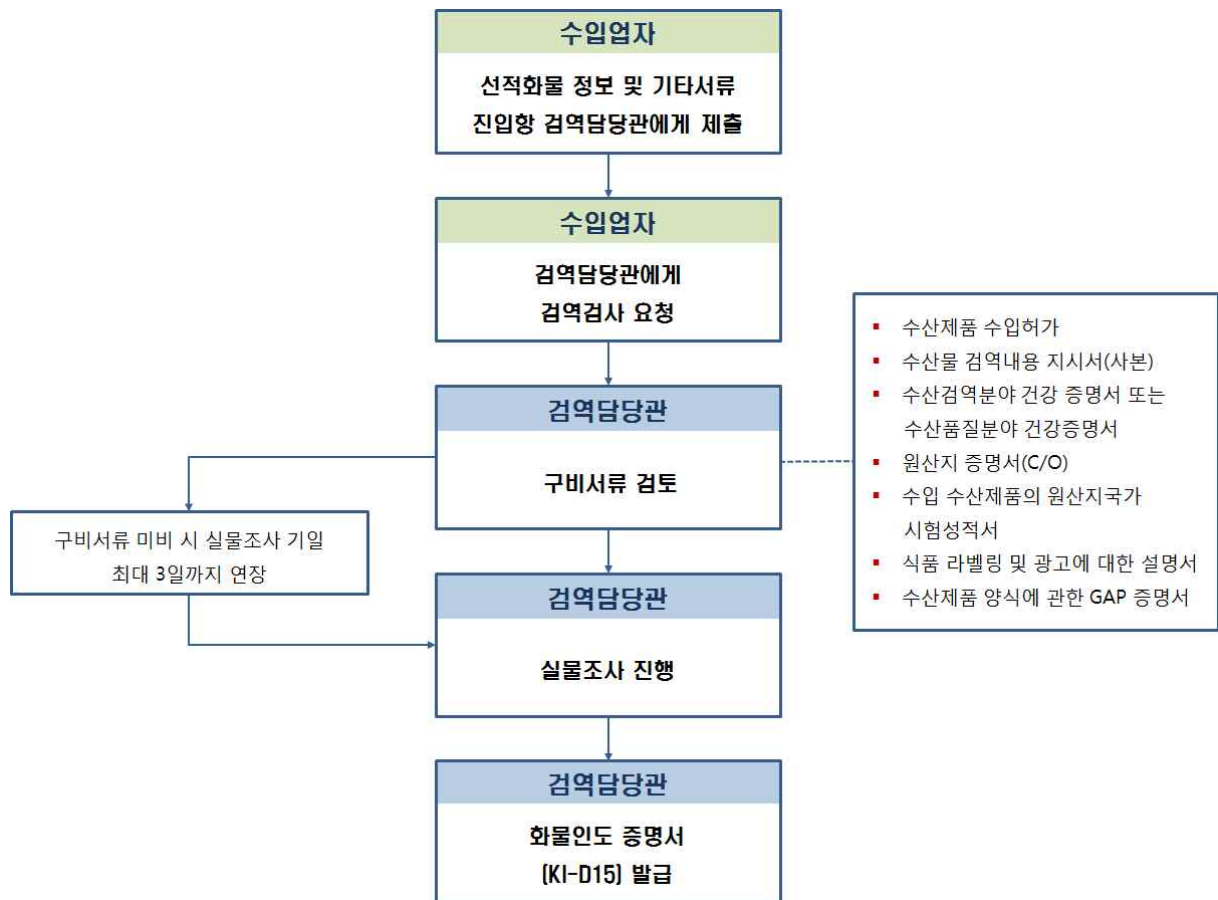


<그림 1> 인도네시아 검역절차

### 3. 제품별 검역제도

#### 가. 수산물의 검역절차

○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법안 및 규정에 따라, **수산제품**의 검역절차는 다음과 같음.



<그림 2> 수산제품 검역절차

#### Step 1.

○ 도착 후, 수입업체는 선적된 화물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서류들을 진입항의 검역담당관에게 제출함.

#### Step 2.

○ 수입업체는 검역담당관에게 검역검사를 요청함.

#### Step 3.

○ 검역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의 완벽성을 검토해야 함.

- 수산제품의 수입허가
- 검역청장 명의로 발급된 수산물 검역내용의 지시서(사본)
- 원산지의 인가된 기관이 발급한 수산검역분야의 건강 증명서 또는 수산품질분야의 건강 증명서
- 원산지 국가의 적법한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(C/O)
- 수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 따라, 수입되는 수산제품이 미생물 오염, 잔류물질, 오염물질, 유해물질 등의 오염이 없고, 냉동상태에서 순중량이 최소 95%를 충족하고 있다는 원산지국가의 시험성적서
- 식품 라벨링 및 광고에 대한 설명서
- 수산제품 양식에 관한 GAP 증명서

#### Step 4.

- 서류가 구비되지 못했을 경우, 검역담당관은 서류보완지시와 함께 관세지역에서 실물조사의 기일을 최대한 3일까지 연장 가능함.
- 수입제품에 대한 서류 확인 및 실물조사가 완료된 이후, 진입항구로부터 운송을 인도한다는 승인서를 발급함.

#### Step 5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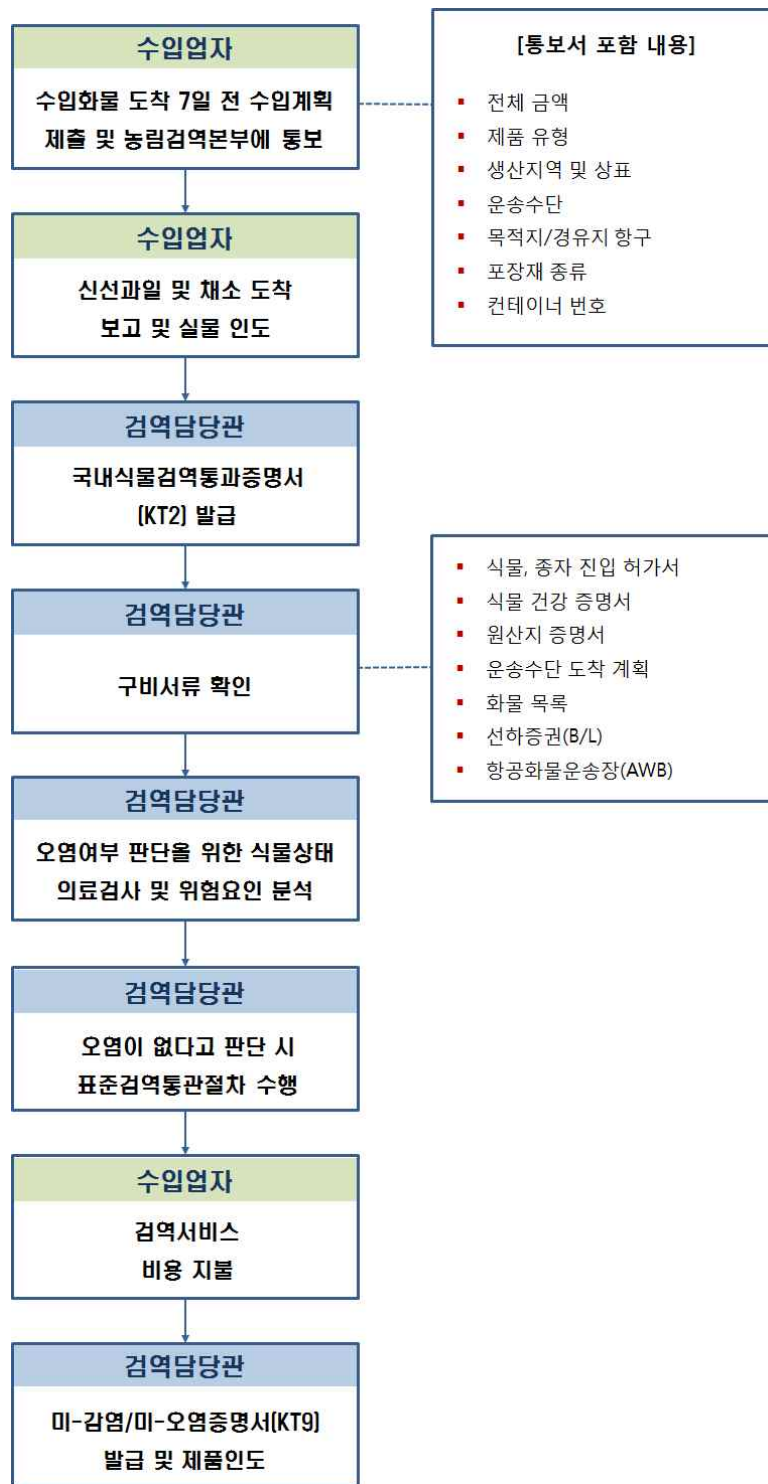
- 검역담당관은 검역행위를 검역시설에서는 3일간, 인가된 실험실에서의 품질실험은 10일간의 기간에 걸쳐 수행하며, 수산제품 견본이 검역시설에 입고된 이후 24시간이 경과한 다음 시료채취를 하여 검역행위를 수행함.
- 인도네시아와 한국 사이의 상호인증협약(MRA) 혹은 양해각서(MoU)에 따라 한국 수출자에 대한 임상검사 및 실험실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1%임.

#### Step 6.

- 검역담당관이 진입항구로부터 화물인도증명서(KI-D15)를 발급하는 것으로 검역절차를 종료함.

### 나. 신선 과일 및 채소의 검역절차

- 신선 과일 및 채소에 대한 검역절차는 인도네시아 법안(No.14/2002-식물 검역)에 설명된 식물 및 종자의 검역절차와 동일함.
-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법안 및 규정에 따라, 신선 과일 및 채소의 검역절차는 다음과 같음.



<그림 3> 신선 과일 및 채소 검역절차

**Step 1.**

-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들은 수입화물이 도착하기 7일 이전에 신선 과일 및 채소에 대한 “수입계획”을 인도네시아 농림검역본부(IAAQ)에 통보하여야 함.

○ 동 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- 전체 금액, 제품의 유형, 생산지역 및 상표, 운송수단, 목적적/경유지 항구, 포장재의 종류, 컨테이너 번호

**Step 2.**

- 수입업체들은 진입항구의 검역담당관에게 신선 과일 및 채소의 도착을 보고하고, 실물을 인도함.
- 농림 검역담당관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국내식물검역통과증명서(KT2)를 발급함.

**Step 3.**

- 검역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확인 함.
  - 식물, 종자 진입 허가서, 식물 건강 증명서, 원산지 증명서, 운송수단의 도착 계획, 화물 목록, 선하증권(B/L), 항공화물운송장(AWB)

**Step 4.**

- 검역담당관은 신선 과일 및 채소에 대한 검역식물방해생명체(OPTK)의 오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식물 상태에 대한 의료검사 및 위험요인분석을 실시함.

**Step 5.**

- 검역담당관은 수입된 신선 과일 및 채소가 검역식물방해생명체(OPTK) 오염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, 표준 검역통관절차를 수행함.

**Step 6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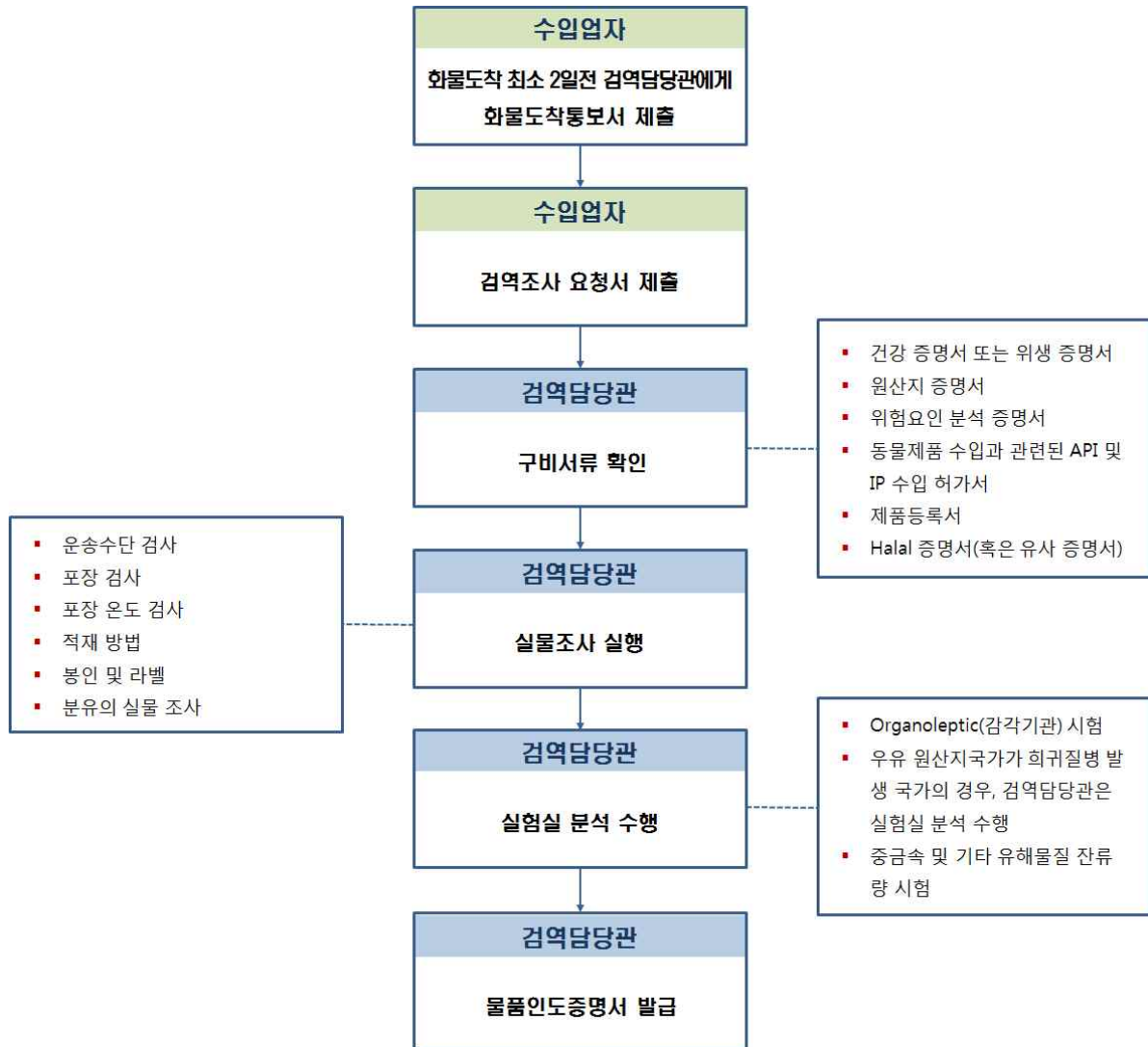
- 수입업체는 검역서비스 비용을 지불함.

**Step 7.**

- 검역담당관은 미-감염/미-오염 증명서(KT 9)를 발급하여, 제품을 인도함.

다. 유아용 조제분유의 검역절차

- **유아용 조제분유**의 검역절차에 관한 규정은 농림검역사무소장 조례 No.436.a/KPTS/PD.670.320/11/07-우유 및 우유제품의 동물성제품에 관한 검역항목 및 절차를 따름.



<그림 4> 유아용 조제분유 검역절차

**Step. 1**

- 수입업체는 화물도착 최소 2일 이전에 검역담당관에게 화물의 도착을 알리는 통보서를 제출함.

**Step. 2**

- 화물도착 통보서와 함께, 수입업체는 검역담당관에게 검역조사 요청서를 제출함.



### Step. 3

- 검역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서류가 구비되었는지를 확인함:
  - 건강 증명서 또는 위생 증명서
  - 원산지 증명서
  - 위험요인 분석 증명서
  - 동물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API 및 IP 수입 허가서
  - 제품 등록서(원산지, 생산공정, 성분, 생산자/제조자의 상호, 제품 유형, 유통기한, 생산번호, 목적 등 표시)
  - Halal 증명서(또는 유사 증명서)

### Step. 4

- 검역담당관은 서류상의 하자 또는 위반 내용이 없는 경우, 실물조사를 수행하며,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:
  - 운송수단 검사(우유 수송의 codex 요구조건 충족여부 확인)
  - 포장 검사
  - 포장 온도 검사
  - 적재 방법
  - 봉인 및 라벨
  - 분유의 실물 조사

### Step. 5

- 검역담당관은 다음을 포함하는 실험실 분석을 수행함:
  - 감각기관(organoleptic) 시험
  - 실험실 분석(우유의 원산지 국가가 희귀질병이 발생한 국가인 경우)
  - 잔류량 시험(중금속 및 기타 유해물질)

### Step. 6

- 모든 시험과 분석들이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이상 없음이 증명된 경우, 검역담당관은 물품인도 증명서를 발급함.

## 4. 검역 관련 정부 법안 및 규정

### 가. 법안

근거 법령	
UU 16/1992	인도네시아 법안 No.16 (1992) - 동물, 수산물 및 식물의 검역
UU 10/1995	인도네시아 법안 No.10 (1995) - 관세법

### 나. 농업부 규정

- 농업부 규정 No.469/KPTS/HK.310/8/2001-인도네시아 역내로의 식물 및 종자의 수입과 관련된 검역행위 기준 관련 규정 No.38/KPTS/HK.310/1/1990의 부속서 III에 대한 개정
- 농업부 규정 No.206/KPTS/TN.530/3/2003-동물 검역 질병의 분류 및 병원체 전달경로의 분류
- 농업부 규정 No.103/KPTS/HK.060/M/2/2004-식물검역행위의 양식 및 서류의 종류
- 농업부 규정 No.508/KPTS/PD.520/8/2004-식물검역항목 해충의 종류 및 전염경로
- 농업부 규정 No.38/KPTS/HK.060/1/2006-식물검역 분류 A1 및 A2의 Group I 및 분류 A1 및 A2 의 Group II의 방해 생명체의 유형 및 숙주 식물, 전염 경로, 분포지역 등
- 농업부 규정 No.37/KPTS/HK.060/1/2006-인도네시아 영내로의 과일 및 신선 과일채소의 수입에 관한 식물검역행위의 기술표준
- 농업부 규정 No.05/Permentan/HK.060/3/06-개인 및 기관의 소유인 식물검역소의 설치에 관한 요구조건 및 절차
- 농업부 규정 No.271/KPTS/HK.310/4/2006-제3자에 의한 식물검역행위의 수행에 관한 요구조건 및 절차
- 농업부 규정 No.34/Permentan/OT.140/7/2006-동물 검역소의 요구조건 및 절차
- 농업부 규정 No.18/Permentan/OT.140/5/2006-진입 및 진출 장소 이외에서의 식물검역 행위
- 농업부 규정 No.52/PERMENTAN/OT.140/10/2006-식물 검역항목의 추가
- 농업부 규정 No.51/KPTS/OT.140/10/2006-검역된 동물의 질병의 검사, 관찰 및 치료에 관한 내부적 업무관계도에 관한 지침서

- 농업부 규정 No.62/Permentan/OT.140/12/2006-병원균 물질 및 축산의학 생물학시료 유형의 진입에 관한 관찰 및 검역행위
- 농업부 규정 No.18/Permentan/OT.140/2/2008-인도네시아 역내로의 bulbs (알뿌리)형태로의 생식물의 진입과 관련한 식물검역 요구조건 및 행위
- 농업부 규정 No.09/PERMENTAN/OT.140/2/2009-인도네시아 역내로의 해충 전염경로 식물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식물검역 요구조건 및 절차
- 농업부 규정 No.12/Permentan/OT.140/2/2009-인도네시아 역내로 수입되는 목재포장재의 식물검역행위 요구조건 및 절차
- 농업부 규정 No.37/Permentan/OT.140/7/2009-식물검역처리 및 선적전 처리에 사용되는 활성 취화메틸을 함유하고 있는 살충제의 사용 관련
- 농업부 규정 No.46/Permentan/HK.340/8/2010-검역 동물 및 검역 식물 방해 생물체의 전염경로 해충 및 질병의 진입 및 확산위치 관련
- 농업부 규정 No.56/Permentan/OT.140/9/2010-진입 및 확산위치 이외의 장소에서의 식물검역조건의 수행 관련
- 농업부 규정 No.90/Permentan/OT.140/12/2011 -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bulbs (알뿌리)형태로의 생식물의 진입과 관련한 식물검역 요구조건 및 행위에 관한 농업부 규정 No.18/Permentan/OT.140/2/2008에 대한 개정
- 농업부 규정 No.89/Permentan/OT.140/12/2011 -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bulbs (알뿌리)형태로의 생식물의 진입과 관련한 기술요건 및 식물검역행위에 관한 농업부 규정 No.37/KPTS/HK.060/1/2006에 대한 개정
- 농업부 규정 No.94/Permentan/OT.140/12/2011 - 검역 동물 질병 및 검역 식물 방해 생명체의 전염경로 진입 및 확산위치
- 농업부 규정 No.16/Permentan/OT.140/3/2012-인도네시아 역내로의 bulbs (알뿌리)형태로의 생식물의 진입과 관련한 식물검역 요구조건 및 행위에 관한 규정인 농업부 규정 No.18/Permentan/OT.140/2/2008에 대한 개정규정인 농업부 규정 No.90/Permentan/OT.140/12/2011에 대한 개정
- 농업부 규정 No.15/Permentan/OT.140/3/2012-인도네시아 역내로의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진입과 관련한 기술요건 및 식물검역행위 규정인 농업부 규정 No.37/KPTS/HK.060/1/2006에 대한 개정규정인 농업부 규정 No.89/ Permentan/ OT.140/12/2011에 대한 개정

- 농업부 규정 No.43/Permentan/OT.140/6/2012-인도네시아 역내로의 신선 layer 뿌리의 진입과 관련한 식물검역행위
- 농업부 규정 No.42/Permentan/OT.140/6/2011-인도네시아 역내로의 신선 과일 및 신선 채소의 진입과 관련한 식물검역행위

#### 다. 해양수산부 발표

- 해양수산부 규정 No.KEP.17/MEN/2003-검역항목의 해충 및 수산물 질병, 분류, 감염 경로, 전파방법 등의 확인
- 해양수산부 규정 No.KEP.16/MEN/2003-검역항목의 해충 및 수산물 질병의 진입 및 진출 항구의 지정
- 해양수산부 규정 No.KEP.18/MEN/2003-인도네시아 역내로의 검역항목 해충 및 수산물 질병 전염경로의 수입 및 역내의 타지역으로의 이동에 관한 검역행위
- 해양수산부 규정 No.KEP.34/MEN/2003-수산물 검역의 건강증명서 및 수산제품의 품질 및 위생 건강증명서의 발급 인가 기관
- 해양수산부 규정 No.PER.55/MEN/2004-Sumatra지역의 일반 Carp 및 Koi (잉어류) 검역대상지역 선포서
- 해양수산부 규정 No.PER.04/MEN/2005-수산물 검역행위의 서류 양식, 형태, 발급방법
- 해양수산부 규정 No.PER.03/MEN/2005-제3자에 의한 검역행위
- 해양수산부 규정 No.PER.05/MEN/2005-검역항목 해충 및 수산물 질병 감염경로의 수출과 관련된 검역행위
- 해양수산부 규정 No.PER.10/MEN/2012-수산물 검역 추가 의무사항

#### 라. 기타 정부기관 발표

-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No.82/2000-동물 검역 관련
-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No.14/2002-식물 검역 관련
-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No.15/2002-수산물 검역 관련
- 무역부 규정 No.51/M-DAG/PER/12/2007-검역 및 선적전 사용을 위한 취화메틸의 수입 관련 조례